

#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7. 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천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9. 7. 9.  
다. 상정일자 : 2009. 7. 13.(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최남용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장애인들을 생산적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작업장의 위치를 규정함(안 제2조)  
○ 장애인 작업장의 사업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
  - 보호작업장 운영,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등- 장애인작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  -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장애인관련단체
  - 위탁기간 : 3년
  - 운영요원,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등 운영규정 제정
- 수탁자에 운영비보조 및 재산을 무상사용 토록함(안 제5조)

- 수탁자의 사전 시장 승인 의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  - 작업장운용계획 및 변경, 작업장운영, 수익금사용등
- 수익금은 작업장 직원급여, 운영유지비, 장애인복지등에만 사용토록 수익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7조)
-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  - 작업장의 타인임대, 용도변경금지
  - 새로운 시설 신·증축, 개축시 사전승인 및 준공후 기부채납등
-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함 (안 제10조)
  - 수탁의무위반, 시장의 감독,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
- 작업장 고용은 제천시 거주 장애인으로 하되 10분의 2 범위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2조 )

### 3.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#### 【 법적 겸토 】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
-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'시장은 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'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무상사용이 타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

### 【 행정적 검토 】

- 조례안 제4조는 작업장 수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, 보건 복지가족부 장관이 협약한 장애인단체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바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1473호)제12조는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- 조례안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은 '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'고 규정하였는 바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
- 조례안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인 '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'는 규정이 수익금의 사용을 규정하는 제7조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사회복지과장 최남용)

- 제5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있는데, 2항에 보면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. 그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?(이정임 의원)  
: 작업장이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정도든지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임.

- 제7조에 보면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 2번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단, 근로장애인 및 직업 급여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 급여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.(이정임 의원)
  - :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보호작업장을 등록을 하면 국도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.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금 사용이 근로장애인에 대해서 급여가 부족할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.
- 제5조 운영비에 급여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?, 운영비에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음. 그런데 7조에서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단 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조항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?(양순경 의원)
  - : 제5조는 운영비에 보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으며, 제7조에는 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규정임.
- 제천시 관내에서 이 작업장을 위탁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?(성명중 의원)
  - : 없음.

## 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## 6. 토론요지

-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시설로써 안 제7조 제2항에 단서규정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포기하고 시에 의지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## 7. 심사 내용

- 이정임 위원의 수정안 발의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)
- 수정안 표결결과
  -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가결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)

## 8. 심사결과

“수정안 가결”

## 9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

## 제천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 
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7조(수익금의 사용) 제2항중 “(단, 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 
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)”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7조(수익금의 사용) ① ----- ----- ② ----- ----- (단, 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부족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)</p>	<p>제7조(수익금의 사용) ① <u>(현행과 같음)</u> ② ----- ----- (삭제)</p>